

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18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9월 27일

발 의 자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 이은미, 김광성, 남진삼의원

1. 제안이유

산림수도 평창의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산림교육 진흥과 산림 보호 및 보존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, 이에 따른 산림교육 기관 지원 등의 관련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
나.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나. 입법예고: '23. 9. 7. ~ 9. 20. (14일간), 의견제출 0건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3. 8. 29. ~ 2023. 9. 7. (10일간), 의견없음

<붙임 1>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창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산림교육”이란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2. “산림교육전문가”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)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.

1.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
3.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
4.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5.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6.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
7.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및 지원) ①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
2.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

②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제6조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추진 등) 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산림교육 연구사업
3. 숲해설가 양성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
4.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

②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 1항에 따른 산림교육 선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)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산림교육 지원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내 산림교육·휴양·문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

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다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.

1.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「유아 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
4. 「영유아 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

제9조(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) 군수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 및 보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단 교육 대상자는 3년 이상 관내 거주자로 한다.

제10조(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) 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별표 2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1. 강사료, 교통비,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
2.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·회의 등의 여비

제11조(포상)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8조(산림교육 지원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내 산림교육·휴양·문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) 군수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 및 보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4